

의안번호	제707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10월 2일

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70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충청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고자 「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대상사무 : 충청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
- 위치 :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번지 일원 *도청 별관 2층(440m²)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*

* 근거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)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- 수탁기관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에 해당되는 자(법인·단체·개인)
- 수탁자 선정 방식 : 공개모집
- 위탁 주요사무
 - 원아모집 및 입·퇴소 관리
 - 보육교직원 채용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
 - 보육시간,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 - 직장어린이집 내·외부 환경 및 시설물 등 관리
 -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건강·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
 - 어린이집 운영 관련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
 -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충청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 계획(안) * 세부내역 별첨

- 위치 :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번지 일원 * 도청 별관 2층(440㎡)
- 운영계획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·운영
 - 시설정원 : 영유아 99명, 직원 23명(원장1, 보육교사14, 보조 교사 등 6, 조리사2)
 - 보육대상 : 본청·외청·사업소, 의회 직원 및 공무원 직원 자녀(만 0~5세)
 - 보육시간 : 07:30 ~ 19:30 * 야간연장 22:00시 / 토요일, 공휴일 제외

○ 소요예산(안) : 6,210백만원(5년간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2025년 (7~12월)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비고
계	6,210	646	1,330	1,370	1,411	1,453	
인건비*	4,021	418	861	887	914	941	
운영비	2,189	228	469	483	497	512	

* 인건비 : 기본급, 각종 수당, 법정부담금, 기타 인건비(기간제 등)

** 운영비 : 일반수용비, 공공운영비, 급식비, 교재·교구 구입, 교육활동 및 행사비, 복리후생비 등

나. 관계법령 : 별첨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7조(사업주의 비용 부담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0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- ❖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직원들의 보육 부담 완화 및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

I 설치개요

- (위 치)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번지 일원
- (설치규모) 440㎡(도청 별관 2층), 실외놀이터 155㎡
- (시설정원) 영유아 99명, 교직원 23명
 - (영유아) 99명(0세 4, 1세 13, 2세 24, 3세 25, 4세 15, 5세 18)
 - (직 원) 23명(원장 1, 보육교사 14, 보조 교사 등 6, 조리사 2)
- (운영방법)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기관 선정·운영
- (소요예산) 1,104백만원 * 설계비('24년 2회 추경예산 반영)
 - 설계비(27백만원), 공사비(431백만원), 운영비^{7~12월}(646백만원)

II 운영방향

-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 및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보육공간으로 조성
- 친환경 교재·놀이기구 사용, 양질의 급식 제공(유기농 등),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구성
- 최상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보육 기관에 위탁 운영

Ⅲ 세부 추진계획

① 설치계획

- (실시설계) '24. 10. ~ 12월 / 27백만원
 - 보육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보육공간으로 설계 추진
- (인테리어) '25. 1. ~ 4월 / 431백만원
 - 보육공간 배치, 붙박이장·바닥·벽체·안전매트 등 친환경 자재로 공사
- (시설인가) 공사 준공 후 청주시 시설인가(신청 후 14일 이내)

② 운영계획

- (시설정원) 영유아 99명, 직원 23명(원장 1, 교사 20, 조리사 2)
- (반 편 성) 0 ~ 5세반 까지 운영 *보육 여건에 따라 변경

< 배치 안 >

구 분	계	0세	1세	2세	3세	4세	5세	보조교사	조리사
영유아 수	99명	4명	13명	24명	25명	15명	18명	-	-
직원 수	22명	2명	3명	4명	2명	1명	2명	6명	2명

* [교사 배치 기준] 0세(3명당 1명), 1세(5명당 1명), 2세(7명당 1명), 3~5세(15명당 1명)

- (보육대상) 본청·외청·사업소 의회 직원 및 공무원 자녀(만 0~5세)
- (보육시간) 07:30 ~ 19:30 * 야간연장 22:00시 / 토요일, 공휴일 제외
- (운영방법) 민간위탁 * '24. 11. ~ 12월중 민간위탁 계획 수립 후 선정
- (운영재원) 도비보조(인건비, 관리운영비) + 정부보육료(관리운영비)

3 민간위탁(안)

- (관련법령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
- (위탁기간) 위·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*
 - * 근거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)
- (위탁범위) 직장어린이집 개원 준비 및 운영, 시설관리 등
- (위탁방법) 공개모집 * 위탁대상 : 법인, 단체, 개인

< 진행절차 >



4 소요예산 산출

- 총사업비 : 1,104,590천원(공사비 458,360 / 관리운영비 646,230)

< 예산 세부내역 >

(단위 : 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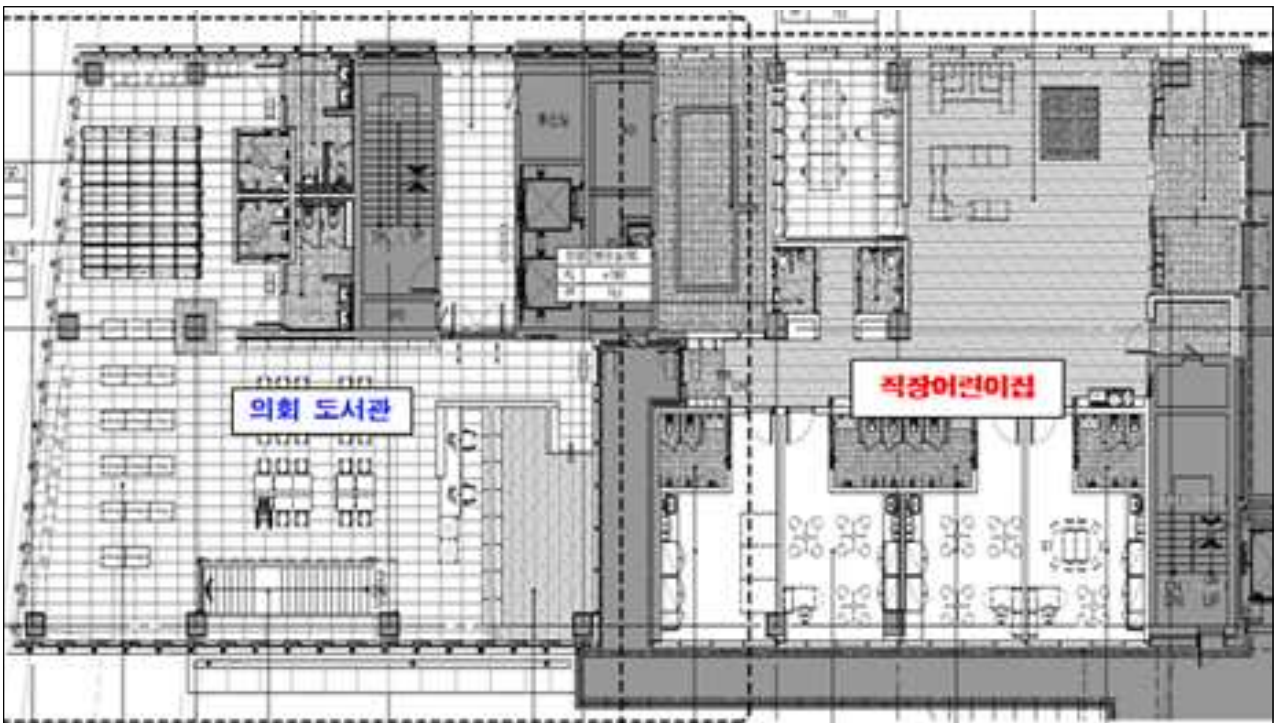
구 분	예산액	내용	비고
계	1,104,590		
공사비	458,360	- 설계비 : 27,000 / 시설비 : 425,000 / 감리비 6,360 ※ 불박이장, 안전설비, 바닥 및 벽체공사 등 친환경 자재로 인테리어 공사 시행	
관 리 유 영 비	소계	646,230	
	인건비	418,235	- 기본급, 수당, 법정부담금, 기타인건비(기간제 등)
	운영비	187,995	- 관리운영비(수용비, 시설유지비 등), 보육 활동 및 특별활동비 등
	개원준비	40,000	- 집기비품 및 사무용품(컴퓨터, 복사기 등) 구입

7~12월
분

□ 위치도



□ 평면도



① 추진근거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, 제4조의2

② 검토의견

검 토 항 목	검 토 의 견	비고
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	○ 우수한 보육교사 채용·관리 및 최상의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육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	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 관련 전문 지식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 기관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	
③ 경제적 효율성	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으로 법령상 정해진 설치·운영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관련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의무 부담	
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보육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해 출산·돌봄 전문지식, 인력, 네트워크 등 활용 및 새로운 보육정책 개발 가능	
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매년 직장어린이집 운영 평가 및 직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	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 권한이 있으며, 위·수탁 계약 체결을 통한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*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5조(지휘·감독)	
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	○ 최상의 보육시스템 도입 및 운영상 문제점 보완을 통해 이상적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도내 모범적인 사례로 확산 가능	

□ 영유아보육법

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

-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거나,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 하여야 한다.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-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37조(사업주의 비용 부담)

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제20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)

-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.

제25조(사업주의 비용 부담)

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(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,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-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 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 2. 위탁계약기간
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 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 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 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
4.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-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5조(지휘·감독)

-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-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